

<p>서울특별시주·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</p> <p>1. 제안경위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 나. 의안번호 : 제845호 다. 제출일자 : 2001. 4. 6. 라. 회부일자 : 2001. 4. 9.</p> <p>2. 제안사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('98.12.31)되어 단속 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우리시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단속공무원의 복장·모자·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.</p> <p>3. 주요골자 가. 제복의 종류를 규정함(안 제3조). (1)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에 규정한 주차단속직류 지방조무원의 경우 ○ 하복, 동복, 춘추복, 방한복, 모자, 신발 (2) 지방조무원을 제외한 단속공무원의 경우 ○ 모자, 완장, 신발(신발은 주차단속을 전담하는 공무원만 착용) 나. 제복의 계절별 착용기간을 규정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. 다. 착용기간 ○ 하계 : 6월 10일 ~ 8월 31일 ○ 동계 : 11월 1일 ~ 다음해 3월 31일 ○ 춘추계 : 4월 1일 ~ 6월 9일, 9월 1일 ~ 10월 31일 라. 다른 법령 등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이 조례에 규정된 완장을 착용</p> <p>4. 참고사항 가. 관계법규 :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(주·정차단속 담당공무원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제복의 종류, 만드는 방식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</p>	<p>정한다. 다만, 제복의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는 미리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</p> <p>다. 기타 규제심사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,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</p> <p>5. 현주·정차단속공무원 현황 가. 주차단속원 현황 ○ 주차단속원 현황 (2000. 12. 31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계</th> <th rowspan="2">여자단속원 (기능직지방조무원)</th> <th colspan="3">남자단속원</th> </tr> <tr> <th>소계</th> <th>기능직</th> <th>고용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74</td> <td>591</td> <td>83</td> <td>5</td> <td>78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나. 주차단속원 임용경위 ○ '89. 6월 : 올림픽이후 차량급증에 따라 시직원의 주차위반 계도 ○ '90. 8월 : 지방자치단체장(구청장)에게도 불법 주·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○ '90. 9월 : 여성주차단속원 최초 공개모집 임용 ※ 결원보충시 및 '96~'97 방법원 직종변경시 고용직 임용 ○ '90.11월 : 구청장에게 단속권 부여('90. 10월 시행령개정)</p> <p>다. 제복착용 현황 ○ '90. 11 최초로 우리시에서 주차단속업무 시행시 제작한 여성주차단속원 제복은 그간 재질이나 제복종류의 일부변경을 제외하고는 디자인, 색상 등의 수정을 험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식별이 용이함. ○ 자치구 여자단속원(기능직 지방조무원)의 경우 우리시 지침에 의거 통일된 제복을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○ 여자단속원 외의 경우는 통일된 제복이 없어 자치구별 설정에 맞추어 제복착용 또는 모자, 완장 등을 착용하고 단속업무를 수행</p> <p>6. 검토의견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서울특별시주·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.</p>	계	여자단속원 (기능직지방조무원)	남자단속원			소계	기능직	고용직	674	591	83	5	78
계	여자단속원 (기능직지방조무원)			남자단속원										
		소계	기능직	고용직										
674	591	83	5	78									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1.4.6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45호로 2001.4.9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. ○ 동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제1조(목적), 제2 조(착용수칙), 제3조 (제복의 종류), 제4조 (착용구분), 제5조(제복의 착용기간), 제6 조(지급기준)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○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그 동안 우리시의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는 주차단속원의 제복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급근거 및 만드는 방법 등을 통일하고 이를 착용함으로써 단속공무원으로서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단속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. ○ 따라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코자 하는 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고무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 ○ 다만 제복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 등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복의 소재 및 재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복제작시 충분한 사전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복으로 인한 불평 불만 등이 없도록 만 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, ○ 특히 자치구간의 제복에 대한 통일을 기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한 단속으로 인 한 시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운용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. <p>□이상으로 서울특별시주·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주·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 관한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 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·정차단속담당공무원(이하 "단속공무원"이라 한다)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착용수칙) ①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,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제복의 종류) ①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에 규정한 주차단속직류 지방조무원의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근무복 : 하복, 동복, 춘추복(이하 "하복 등"이라 한다), 방한복 나. 모자 :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회장 다. 신발(부츠 포함) 라. 장구 : 혁대 및 견식 마. 부속물 : 넥타이·타이핀 및 허리띠 2. 제1호에서 규정된 공무원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모자 :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회장 나. 완장 다. 신발(주차단속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)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</p> <p>제4조(착용구분)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,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. 2.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. 3.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. <p>제5조(제복의 착용기간) ①하복 등은 하계·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하계 : 6월 10일 ~ 8월 31일 2. 동계 : 11월 1일 ~ 다음해 3월 31일 3. 춘추계 : 4월 1일 ~ 6월 9일, 9월 1일 ~ 10월 31일 <p>③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지급기준)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되, 서울특별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</p>
--	---